

공학교육인증제 참여 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학칙」 제81조제3항에 의거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공학 교육인증제에 참여하는 학부(과)·전공의 학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 학부(과)·전공) 공학교육인증제에 참여하는 학부(과)·전공은 [별표1]과 같다.

제3조(프로그램 구분 및 명칭) ①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심화 프로그램”이라 함은 공학교육인증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교과과정을 말한다.
2. “일반 프로그램”이라 함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 운영 규정」에 의한 교과과정을 말한다.
- ② 학부(과)·전공별 프로그램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심화 프로그램 이수) ① 공학교육인증제 대상 학부(과)·전공의 재학생은 심화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2016학년도 이후 공학교육인증제에 참여하는 해당 학부(과)의 신입생은 입학과 동시에 심화 프로그램의 참여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③ 2017학년도 이후 공학교육인증제에 참여하는 해당 학부(과)의 전입(편입, 전부(과), 재입학)생은 전입과 동시에 심화 프로그램의 참여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④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 조항 범위로 보고, 각 심화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화 프로그램의 이수여부를 결정한다.

1. 편입생, 전부(과)생, 재입학생의 경우
2. 다전공 및 융합전공 이수자로서,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학·석사 연계과정 포함), 자기설계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군사관후보생과정(ROTC)을 이수하는 경우
3. 조기졸업신청자, 교직이수자 학생의 경우
4. 복수·부·연계·자기설계연계전공과 전공교직과정을 동시 이수하는 자와 복수·연계전공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
5. 위탁생 및 외국인 유학생, 교류학생(한 학기 이상), 학기중 인턴파견(해외현장실습포함)학생의 경우
6.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계약학과 학생의 경우

⑤ 위의 각 호의 예외 조항에 속하는 학생의 경우, 졸업시점에 예외조항 범위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⑥ 소속 학부(과)·전공의 심화 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 규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영역별 이수학점 취득
2. 전공교과 학점 중 심화 프로그램에서 정한 입문 및 종합설계를 포함한 설계 교과목 학점을 취득
3. 심화 프로그램에서 정한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최소 졸업기준 [별표 2] 이상 취득

제4조의 2(편입생 초과학점 취득) 편입생이 심화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매학기 최대 신청학점 외에 3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있으며, 초과 신청할 수 있는 교과목은 공학교양과 기초과학 및 수학교과에 한한다.

제5조(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 ① 심화 또는 일반 프로그램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하는 자는 다음 [별표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심화 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제6차 학기말에 심화 프로그램 이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 및 학과장(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과(전공)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화 프로그램 및 일반 프로그램의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를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의 전공 교과목의 대체교과목 인정은 「공학교육인증제 운영내규」로 정한다.

제6조(심화 프로그램 중도포기) ① 심화 프로그램을 중도포기하고 일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심화프로그램 이수포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및 학과장(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과(전공)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2016학년도 이후 공학교육인증제에 참여하는 해당 학부(과)의 신입생과 2017학년도 이후 공학교육인증제에 참여하는 해당 학부(과)의 전입(편입, 전부·과, 재입학)생들 중 예외조항에 속하는 자는 심화 프로그램의 이수여부를 제7차 학기 수강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단, 졸업시점에서 각 예외조항의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다.

③ 학년도별 졸업예정자의 심화 프로그램 중도포기 시기는 [별표 4]와 같다.

④ 중도포기자는 제6차 학기말에 심화 프로그램 이수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심화 프로그램 재이수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및 학과장(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과(전공)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유사 및 대체과목 인정) 심화 프로그램 교과목의 개설 학년 및 학기 변동 등의 사유로 유사 과목을 이수한 경우와 전부(과)생 및 편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심화 프로그램 교과목 인정여부는 프로그램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심화 프로그램 이수사정) ① 심화 프로그램 대상자의 심화 프로그램 이수사정은 졸업예정학기 말에 각 심화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학과(전공)는 각 프로그램위원회의 심화프로그램 이수요건 사정 결과를 공학교육혁신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검토 후 해당 학과의 소속 대학장 혹은 독립 학부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학위수여 및 표기) ① 심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칙 제50조 제2항 별표2(2-2)의 학위를 수여하며, 영문명은 [별표 5]와 같다.

② 「교육과정 운영 규정」제10조 규정에 따른 각 교과과정의 영역별 이수학점을 이수하고 심화 프로그램 이수포기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동아대학교 학칙」 제50조제2항 별표2(2-1)의 학위를 수여한다.

③ 심화 프로그램을 이수 중인 자와 이수한 자의 학적부를 포함한 제 증명서 전공명칭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프로그램위원회) 공학교육인증제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심화 프로그램 내에 학부(과)·전공별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위원회를 둔다.

제11조(운영내규) 심화 프로그램 교과목, 설계교과목,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각 프로그램의 교과과정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학교육인증제운영 내규」에 따른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사에 관한 제규정류를 준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2004학년도 신입생(1,2학년 복학생 포함) 부터 적용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종전의 “공학교육인증제 운영지침”에 의거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인증프로그램 적용대상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호 제1항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2003학년도 이후 신입[복학, 전부(과), 편입학, 복수·부전공 포함]학생이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인증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을 이수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 ③(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6조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학년도 졸업예정자는 제7차 학기말에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심화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최소 졸업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3의 복수.부전공 이수요건의 변경사항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1학년도 이전 신입생이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심화프로그램 이수포기서

프로그램	프로그램위원장	학과장(책임교수)

공학·교육혁신센터	담당	소장

1. 신청자

대학		학부(과)		전공	
학년		학번		이름	

2. 심화프로그램 대학 및 학과

대학		학부(과)		전공	
----	--	-------	--	----	--

3. 상세내용

상기 본인은 _____학년도 제 _____학년 _____학부(전공)·학과의 심화프로그램 이수자로서 다음의 사유로 심화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포기사유 :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 제2호 서식)

심화프로그램 이수신청서

프로그램	프로그램위원장	학과장(책임교수)

공학교육혁신센터	담당	소장

1. 소속대학

대학		학부·과		전공	
학년		학번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2. 복수(부)전공 대학 학부(과)·전공

대학		학부·과		심화전공	
----	--	------	--	------	--

「공학교육인증제 참여 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인증제를 운영하는 전공의 복수(부)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심화프로그램 이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표1]

공학교육인증제 참여 학부(과)·전공 및 프로그램 명칭

학부(과)·전공	심화 프로그램	일반 프로그램	비고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심화 프로그램	건설시스템공학 프로그램	
미래에너지공학전공	에너지·자원공학심화 프로그램	에너지·자원공학 프로그램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심화 프로그램	전자공학 프로그램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심화 프로그램	컴퓨터공학 프로그램	
건축공학전공	건축공학심화 프로그램	건축공학 프로그램	
기계공학과	기계공학심화 프로그램	기계공학 프로그램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심화 프로그램	산업경영공학 프로그램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심화 프로그램	신소재공학 프로그램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심화 프로그램	화학공학 프로그램	

[별표2]

심화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최소 졸업기준

학부(과)·전공	심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최소 기준	비고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심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학습성과 상·중·하 구분의 중	
미래에너지공학전공	에너지·자원공학심화 프로그램	최대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60%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심화 프로그램	최대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60%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심화 프로그램	최대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60%	
건축공학전공	건축공학심화 프로그램	최대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60%	
기계공학과	기계공학심화 프로그램	최대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60%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심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학습성과 상·중·하 구분의 중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심화 프로그램	최대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60%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심화 프로그램	최대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60%	

[별표3]

복수·부전공자의 이수요건

1. 소속 학부(과)·전공이 심화 프로그램인 자의 이수요건

구 분	심화 프로그램	일반 프로그램
복수 전공	1. 소속 학부(과)·전공의 심화 프로그램을 이 규정 제4조에 의거 이수 2.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학부(과)·전공의 교과를 다음과 같이 이수 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교과를 추가 이수 나. 전공교과 학점 중 심화 프로그램에서 정한 입문 및 종합설계를 포함한 설계 교과목 학점을 취득 ※ 이수학점의 기준은 인증원의 지침에 따름 다. 심화 프로그램에서 정한 최소 프로그램 학습성과(별표 2) 이상 취득	1. 소속 학부(과)·전공의 심화 프로그램을 이 규정 제4조에 의거 이수 2.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학부(과)의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교과 이수
부전공	1. 소속 학부(과)·전공의 심화 프로그램을 이 규정 제4조에 의거 이수 2. 부전공하고자 하는 학부(과)·전공의 교과를 다음과 같이 이수 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교과를 추가 이수 나. 전공교과 학점 중 심화 프로그램에서 정한 입문 및 종합설계를 포함한 설계 교과목 학점을 취득 ※ 이수학점의 기준은 인증원의 지침에 따름 다. 심화 프로그램에서 정한 최소 프로그램 학습성과(별표 2) 이상 취득	1. 소속 학부(과)·전공의 심화 프로그램을 이 규정 제4조에 의거 이수 2. 부전공하고자 하는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교과 이수

2. 소속 학부(과)·전공이 심화 프로그램이 아닌 자의 이수요건

구 분	인증 프로그램	일반 프로그램
복수 전공	1. 소속 학부(과)의 전공심화 교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을 이수 2.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학부(과)·전공의 교과를 다음과 같이 이수 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교과를 추가 이수 나. 전공교과 학점 중 심화 프로그램에서 정한 입문 및 종합설계를 포함한 설계 교과목 학점을 취득 ※ 이수학점의 기준은 인증원의 지침에 따름 다. 심화 프로그램에서 정한 최소 프로그램 학습성과(별표2) 이상 취득	「복수전공이수규정」에 따름
부전공	1. 소속 학부(과)의 전공심화 교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을 이수 2. 부전공하고자 하는 학부(과)·전공의 교과를 다음과 같이 이수 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교과를 추가 이수 나. 전공교과 학점 중 심화 프로그램에서 정한 입문 및 종합설계를 포함한 설계 교과목 학점을 취득 ※ 이수학점의 기준은 인증원의 지침에 따름 다. 심화 프로그램에서 정한 최소 프로그램 학습성과(별표2) 이상 취득	「부전공이수규정」에 따름

[별표4]

심화 프로그램 중도포기시기

구분	2008학년도 후기, 2009학년도 졸업자 (09년 8월, 10년 2월, 10년 8월)	2010학년도 졸업자 (11년 2월, 11년 8월)	2011학년도 이후 졸업자 (12년 2월 이후)	2018학년도 전기 이후 졸업자 (19년 2월 이후)
정규과정자	제5차 학기말	제4차 학기말	제4차학기말 / 제6차학기말	제7차 학기 수강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조기졸업자	제5차 학기말	제4차 학기말	제4차학기말 / 제5차학기말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자	제5차 학기말	제4차 학기말	제5차 학기말	
편입생	제5차 학기말	제5차 학기말	제6차 학기말	
3학년 전부(과)생	제5차 학기말	제5차 학기말	제6차 학기말	

[별표5]

제 증명서 심화 프로그램 학위명

학부(과)·전공	심화 프로그램(국문)	심화 프로그램(영문)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in Civil Engineering
미래에너지공학전공	에너지·자원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i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Engineering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in Electronics Engineering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in Computer Engineering
건축공학전공	건축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기계공학과	기계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in Mechanical Engineering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in Industrial and Management System Engineering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i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in Chemical Engineering

[별표6]

제 증명서 심화 프로그램 표기명

학부(과)·전공	심화 프로그램	비 고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심화전공	
미래에너지공학전공	에너지·자원공학심화전공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심화전공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심화전공	
건축공학전공	건축공학심화전공	
기계공학과	기계공학심화전공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심화전공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심화전공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심화전공	